종암 2차 SK VIEW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 적용대상 주택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어 1순위 청약제한 제도가 적용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개발과 -11352호 (2008. 9. 2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5-2번지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0층 6개동 393세대(임대 68세대 포함) 중 113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면적			세대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소 계			
민영주택	22061-01	2008000804(01)	81.16(205동)	59.95	21.21	81.16	31.24	112.41	32.61
	22061-02	2008000804(02)	81.62A(202동)	59.98	21.64	81.62	31.26	112.88	32.74
	22061-03	2008000804(03)	81.62B(204동)	59.98	21.64	81.62	31.26	112.88	32.74
	22061-04	2008000804(04)	81.62C(205동)	59.98	21.64	81.62	31.26	112.88	32.74
	22061-05	2008000804(05)	147.82(201동)	119.87	27.95	147.82	62.47	210.29	61.00

주택형	층 별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금액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09.1.20	09.5.20	09.9.21	10.1.20	10.5.20	10.9.20	
81.16 205동	2	1	158,846	132,454	291,300	58,260	29,130	29,130	29,130	29,130	29,130	29,130	58,260
	3	1	162,718	135,682	298,400	59,680	29,840	29,840	29,840	29,840	29,840	29,840	59,680
	4	1	167,353	139,547	306,900	61,380	30,690	30,690	30,690	30,690	30,690	30,690	61,380
	5~7	3	171,061	142,639	313,700	62,740	31,370	31,370	31,370	31,370	31,370	31,370	62,740
	18	1	177,004	147,596	324,600	64,920	32,460	32,460	32,460	32,460	32,460	32,460	64,920
	19	1	180,222	150,278	330,500	66,100	33,050	33,050	33,050	33,050	33,050	33,050	66,100
81.62 A 202동	2	2	158,846	132,454	291,300	58,260	29,130	29,130	29,130	29,130	29,130	29,130	58,260
	3	2	162,718	135,682	298,400	59,680	29,840	29,840	29,840	29,840	29,840	29,840	59,680
	4	2	167,353	139,547	306,900	61,380	30,690	30,690	30,690	30,690	30,690	30,690	61,380
	5~10	12	171,061	142,639	313,700	62,740	31,370	31,370	31,370	31,370	31,370	31,370	62,740
	11~15	10	174,223	145,277	319,500	63,900	31,950	31,950	31,950	31,950	31,950	31,950	63,900
	16~18	6	177,004	147,596	324,600	64,920	32,460	32,460	32,460	32,460	32,460	32,460	64,920
	19~20	4	180,222	150,278	330,500	66,100	33,050	33,050	33,050	33,050	33,050	33,050	66,100
81.62 B 204동	1	2	157,210	131,090	288,300	57,660	28,830	28,830	28,830	28,830	28,830	28,830	57,660
	2	2	158,846	132,454	291,300	58,260	29,130	29,130	29,130	29,130	29,130	29,130	58,260
	3	2	162,718	135,682	298,400	59,680	29,840	29,840	29,840	29,840	29,840	29,840	59,680
	4	2	167,353	139,547	306,900	61,380	30,690	30,690	30,690	30,690	30,690	30,690	61,380
	5~8	8	171,061	142,639	313,700	62,740	31,370	31,370	31,370	31,370	31,370	31,370	62,740
	18	2	177,004	147,596	324,600	64,920	32,460	32,460	32,460	32,460	32,460	32,460	64,920
	19~20	4	180,222	150,278	330,500	66,100	33,050	33,050	33,050	33,050	33,050	33,050	66,100
81.62 C 205동	1	1	157,210	131,090	288,300	57,660	28,830	28,830	28,830	28,830	28,830	28,830	57,660
	2	1	158,846	132,454	291,300	58,260	29,130	29,130	29,130	29,130	29,130	29,130	58,260
	3	1	162,718	135,682	298,400	59,680	29,840	29,840	29,840	29,840	29,840	29,840	59,680
	4	1	167,353	139,547	306,900	61,380	30,690	30,690	30,690	30,690	30,690	30,690	61,380
	5~6	2	171,061	142,639	313,700	62,740	31,370	31,370	31,370	31,370	31,370	31,370	62,740
	18	1	177,004	147,596	324,600	64,920	32,460	32,460	32,460	32,460	32,460	32,460	64,920
	19	1	180,222	150,278	330,500	66,100	33,050	33,050	33,050	33,050	33,050	33,050	66,100
147.82 201동	2	4	323,090	269,410	592,500	118,500	59,250	59,250	59,250	59,250	59,250	59,250	118,500
	3	4	326,689	272,411	599,100	119,820	59,910	59,910	59,910	59,910	59,910	59,910	119,820
	4	4	345,066	287,734	632,800	126,560	63,280	63,280	63,280	63,280	63,280	63,280	126,560
	5~10	15	359,734	299,966	659,700	131,940	65,970	65,970	65,970	65,970	65,970	65,970	131,940
	11~15	5	367,096	306,104	673,200	134,640	67,320	67,320	67,320	67,320	67,320	67,320	134,640
	16~18	3	374,403	312,197	686,600	137,320	68,660	68,660	68,660	68,660	68,660	68,660	137,320
	19~20	2	381,165	317,835	699,000	139,800	69,900	69,900	69,900	69,900	69,900	69,900	139,8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의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층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오니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정부가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 또는 대한주택보증㈜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하며,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실제 착수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3회로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청약통장가입일, 주택소유여부, 재당첨금지, 세대주여부, 무주택 세대주 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약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착오 및 기재오류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가입한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불가에 따른 책임 또한 당사에서 지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신청미달분은 신청형별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미포함된 가격임.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주택투기지역(2006. 10. 27부터 시행)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주택담보 대출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모집 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은 2002. 9. 6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계약체결 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이 적용되어,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는 가능)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는 가능)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선택 옵션 판매가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주택형	구분	발코니 확장공사						선택옵션			
		거실	부부침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천장형에어컨 기본형	천장형에어컨 추가형	아트월(거실+현관벽)	폴리싱타일(거실+주방)
81.62㎡	확장공사비	2,423	–	3,591	1,396	1,682	–	거실 1, 안방 1 개소 3,023	–	2,839	–
	미확장부위 샷시(단창)	1,211	1,097	903	825	793					
81.16㎡	확장공사비	2,114	–	3,966	1,627	1,473	–	거실 1, 안방 1 개소 3,023	–	2,621	–
	미확장부위 샷시(단창)	1,260	1,263	859	829	782					
147.82㎡	확장공사비	3,091	–	5,378	1,536	1,541	1,625	거실 2, 안방 1, 주방 1 개소 6,352	[illegible]+침실 3 개소 10,543	3,709	6,874
	미확장부위 샷시(단창)	1,331	1,358	947	813	878	878				

- 발코니 확장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 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 항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실별 선택 시 미확장부위는 단창샷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선택 가능함
(예) 81.62형에서 거실만 선택한 경우 확장 공사비는 6,041,000원임
(거실확장공사비 2,423,000원 / 부부침실,주방,침실1,침실2 샷시공사비 3,618,000원을 합한 금액임)
- 아트월은 거실 확장 시 선택 가능함 (천연재질 특유의 특성상 색상 차이가 납니다)
- 폴리싱 바닥 타일은 거실 및 주방 확장시 선택 가능함
- 천장형 에어컨 계약시 기본냉매배관 치감함
- 주방 발코니 확장시 포함 사항
1) 81.62 : 씽크대 상판(인조대리석 스톤)
2) 81.16 : 씽크대 상판(인조대리석 스톤)
3) 147.82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주방 가구, 씽크대 상판(천연석재), 아일랜드 작업대(천연석재) 포함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님
(개인 선택사항이며, 아파트 공급 계약과는 별도 계약 사항임)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 일정

면적구분(전용면적)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전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2008. 9. 29.	당사 견본주택/ 10:00~14:00	2008. 9. 29./ 당사견본주택/15:00

-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거주지별	81.62㎡	81.16㎡	147.82㎡	계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서울시 거주자	1	1	1	3
	경기도 거주자	1	0	0	1
신혼부부 보금자리 특별공급	서울시 거주자	10	1	0	11
	경기도 거주자	8	1	0	9
	인천시 거주자	2	0	0	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40%, 인천광역시 거주자 10%에게 각각 공급함.

1)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5)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함.
- 청약예금가입 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함.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5)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고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동점자 처리기준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①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2)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5)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인 경우 출산자녀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2,572,802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3,675,431원이하)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인 세대는 4인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이어야 한다[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②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 선정방법
①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주택공급신청자 중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2항의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자격입증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5)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청약통장가입확인서(청약통장가입 해당은행에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통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소득입증 구비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혹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상기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5)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이상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5)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의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이상 청약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재당첨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청약관련 입주자저축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되고 2순위 청약은 불가함 ※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8. 9. 30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인터넷 08:30~18:00	• 일시 : 2008.10.1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헤럴드경제 신문에 게재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 (舊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전용면적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 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로 자동 전환됨.		2008. 10. 1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2008. 10. 2	• 접수장소 농협중앙회 전국영업점 • 접수시간 : 09:30~16:30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 시간(09:30 ~ 16:30)]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 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94. 8. 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75%	50%
추첨제	25%	5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미만	2	8년이상~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분리세대시 배우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이상~2년미만	4	9년이상~10년미만	20	
		2년이상~3년미만	6	10년이상~11년미만	22	
		3년이상~4년미만	8	11년이상~12년미만	24	
		4년이상~5년미만	10	12년이상~13년미만	26	
		5년이상~6년미만	12	13년이상~14년미만	28	
		6년이상~7년미만	14	14년이상~15년미만	30	
		7년이상~8년미만	16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미만	1	8년이상~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1년미만	2	9년이상~10년미만	11	
		1년이상~2년미만	3	10년이상~11년미만	12	
		2년이상~3년미만	4	11년이상~12년미만	13	
		3년이상~4년미만	5	12년이상~13년미만	14	
		4년이상~5년미만	6	13년이상~14년미만	15	
		5년이상~6년미만	7	14년이상~15년미만	16	
		6년이상~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8년미만	9	–	–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청약신청 접수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특별공급(3자녀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보금자리)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동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舊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통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인터넷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청약	청약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은행 창구 방문 청약신청 방법

구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 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 농협중앙회 전국영업점에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가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 청약신청금 (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200만원	400만원	창구청약 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비서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8. 10. 13)이후 (평일 09:30 ~ 16:30)	청약접수한 농협중앙회 전국영업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 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상기 환불 시 구비서류외에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농협중앙회 전국영업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 한함으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아래와 같이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를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구분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 2008. 9. 29 (15:00)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입회 하에 동·호수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한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최저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동·호수 추첨 일시는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재개발 조합원에 기 배정된 동·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호수에 대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를 결정함.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안내

구분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접속▷청약센터▷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8. 10. 10 ~ 10. 19 (10일)	2008. 10. 10 ~ 10. 19 (10일)
전화(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 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전화 1588-9999 (서비스코드 701)	전화 1369 (서비스코드 5#)
	이용기간	2008. 10. 10 ~ 10. 19 (10일)	2008. 10. 10 ~ 10. 19 (10일)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8. 10. 10 (08 : 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계약체결안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대상	계약기간	계약체결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2008. 10. 15~ 2008. 10. 17. (3일간)	당사견본주택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동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용) 1통 •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증이나 수도권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 한함) ⑥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1순위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②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③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④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 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이외에는 모두 제 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③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됨.

- 중도금 납부계좌

납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중앙회	024-01-113270	종암6구역재개발조합외 1인	

- 발코니확장 및 선택옵션 대금 납부계좌 안내
-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대금 납부계좌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며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②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③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④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⑤ 1, 2, 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⑥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3자녀 특별공급당첨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향후 특별공급 자격박탈 및 일반청약 자격이 제한됨.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계약체결 후에도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이후 14일간의 소명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와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 준함.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자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입주예정자에 대한 융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본 아파트는 당첨된 해당 동호수 분양대금 중 계약금(총 분양금액의 20%) 납입 후 총 분양금액의 40% 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입주예정일 안내
- 입주예정월 : 2010년 10월-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예정 (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입주 전(사용검사일 기준 약 1~2개월 이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금삼백팔십이억칠천구백구십이만원정(₩38,279,920,000)	제 01212008-101-0005800호

▶분양보증약관중 주요내용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인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마감재 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구분	업체명	감리금액	VAT구분
건축, 기계, 설비, 토목	㈜거성이엔지건축사사무소	금 일십이억일천육십칠만사천육십사원정 (₩1,210,674,064)	VAT별도
전기	㈜일신전기감리	금 삼억육천구백사십팔만삼천팔백이십오원정 (₩369,483,825)	VAT포함
통신, 소방	태형전기주식회사	금 이억육백만원정 (₩206,000,000)	VAT별도

▶유의사항
1. 청약 시 신청한 내용과 인터넷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창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기 바람.
2. 주택공급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에 변경 하기 바람.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5.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7.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8. 부적격당첨자로 판명이 될 경우 당첨이 취소됨과 동시에 기 체결한 분양계약은 해제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9.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이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1개 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자 본인이 2건 이상 청약시 이중 청약 처리되어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함.
10.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11.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은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 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는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12. 사용검사일 지연, 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지연될 수 있음.
13.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14.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계약 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5. 본 아파트의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용됨.
16. 주택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7.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과 견본주택(실물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사업승인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18. 세대 내 시공제품은 계약용 인쇄물(카탈로그)과 견본주택(실물세대)을 기준으로 하되 실물세대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등으로 실제 시공 시 동급(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19.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국토해양부 주관 30145-26905)에 의거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견본주택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토록 함.
20.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의 조감도, 사진 및 이미지 그림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1. 견본주택 내에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22. 마감자재내용은 평형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23.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건축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시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분양금액은 평당 분양가격에 의거 잔금 납부 시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24. 본 아파트의 기능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25.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6.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실물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7.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8. 입면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 등의 변경 시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APT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29.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함.
30.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31. 일반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재개발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32.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3. 본 아파트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내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34. 본사업지는 도로에 면하고 있어 자동차통행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35. 각 주동의 코어(엘리베이터, 계단실, 복도, 창 등) 형태는 주동의 위치 및 주동타입에 따라 다른 형태로 계획되어 있어 채광 및 복도 크기 등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6.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37.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38.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
39.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임.
40. 공급면적의 변경이 없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41.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42.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 시 별도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분양 시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에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43.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4.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5.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 등이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46.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은 시공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47.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후 변경될 수 있음.
48. 대피공간의 칸막이는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변경되어 질 수 있음.
49. 배치상 세대 전·후면에는 주동 출입구 경사로,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출입 경사로, 지상 주차장 등이 설치되며, 이에 대한 주변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하중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 및 일조권 등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50.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51.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배기구,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를 받을 수 있음.
52.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함.
53.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주민운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54.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능함.
55.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 흐름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56.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평면,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7.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의해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8.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59. 문고,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련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0. 아파트 주동,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색채, 재질, 간판, 조경, 설치위치는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61.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경우 이의없이 동의하며, 추후 통보시 면적 및 지분이 변동된 경우 차이에 대해 정산토록 함.
62.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63.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64. 사업승인도서상의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구조형식이나 기초 및 구조물의 형식 등은 실제 지질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음.
65. 계약 시 모델하우스 및 분양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실 대지 측량에 의한 설계변경, 기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동의함.
66. 205동, 206동 하부 지하데크층에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문고,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205동 4호라인 1층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05동, 206동 전면에는 선큰이 위치하고 있음.
67. 203동 후면의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205동 후면의 어린이놀이터로 인해 해당 동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68. 201동, 202동 사이 지하에 정화조가 설치되고 202동 2호라인 세대측벽에 정화조 배기탑이 위치함.
69. 202동 전면 지하에 빗물저류조가 위치함.
70. 204동 1호라인, 205동 4호라인 전면 지하에 정화조가 설치되고 204동 1호라인 세대측벽에 정화조 배기탑이 위치함.
71. 201동 4호라인, 202동 1호라인 사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소가 설치됨.
72. 205동 3호,4호 라인 세대의 경우 주동형태에 따라 계단실에 채광창이 없어 계단실이 어두울 수 있음.
73. 202동 2호라인에 접하여 임대아파트 51.81㎡형 68세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전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임.
74. 203동 1호, 3호라인, 204동 1호라인, 205동 1호라인, 206동 1호라인 후면에는 주동 출입 장애인용 경사로가 설치됨.
75. 203동 1호라인 측벽에는 D.A가 설치됨.
76. 203동 전면에는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비상차량 경사로, 보행 경사로가 설치된 단지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77. 201동 1호라인 전면에는 비상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가 설치된 단지 부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해당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78. 201동 1호, 2호라인 후면에는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79. 201동 2호라인 1층 피로티에는 북측 어린이공원과 연결된 보행자 연결통로가 설치됨.
80. 201동, 202동 후면에는 내부순환도로(고가도로) 및 도로(우인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81. 204동 전면, 205동 전면에는 근린생활시설, 205동 3호라인 전면에는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소가 설치됨.
82. 205동 2호라인 후면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됨.
83. 203동 4호라인 전면에는 경비실이 설치됨.

■ 사업주체

▶시행자 : 종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황필선 (법인번호 : 114471-0002896)
▶시공사 :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웅석 (건설부 제 308호)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8-41 ☎(02)2051-7711(대표) http://www.skview.co.kr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둘째자리까지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3.3058 또는 형별면적(㎡) × 0.3025)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위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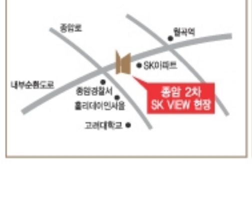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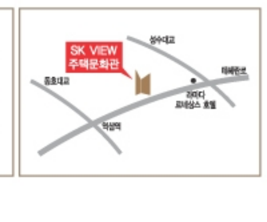

문의 02·2051·7711

시행자 : 종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SK건설